

평창공영버스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324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24. 8. .
제안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 제7조 제1항에 따라 평창공영버스터미널 민간위탁에 대한 평창군의회 동의 받기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평창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민간위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추진근거
 - 지방자치법 제11조(사무의 위임 등)
 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 -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(대상사무)
- 필요성
 - 경영악화로 인한 터미널 사업 중단 위기를 방지하고 주민과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상화 방안으로써 민간위탁을 통한 버스터미널의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다. 위탁사무 내용 등 위탁 범위

- 위탁사무: 평창공영버스터미널 운영 및 관리 전반
- 위탁사무범위
 - 시설물의 관리 및 기능 유지, 이용자 대표관리 업무
 - 여객의 원활한 수송 및 터미널 사용자 편의(화장실 등) 제공

라. 위탁시설 개요

시설명	소재지	규모	위탁대상시설	비고
평창공영버스 터미널	평창읍 백오1길3	-대지면적 1,953m ² -연면적 603.26m ² (지상2층,승강장)	-지상 1층 매표소, 대합실, 승강장, 공용화장실	

마. 민간위탁기간 : 2024. 11. ~ 2029. 10.(5년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

- 위탁방법 : 공개모집,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 결정
- 신청자격
 - 터미널 사업 수탁관리 경력이 있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
 - 위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 평창군내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법인·단체 또는 주소를 둔 개인
- 선정기준 : 위탁운영 심사평가 총점 최고득점자 협상 선정
 - 사업운영 적정성(20점), 사업비 집행계획 및 예산운용(20점)
 - 시설,인력 운영계획의 효율성(30점),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(30점)

사. 소요예산 : 금93,908천원(년/부가세포함)(산출근거 붙임1 참조)

※ 2024년 소요예산 : 금20,000천원(11월~12월 인건비,운영비)

아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

-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실현하고 서비스 질 향상 및 여객의 편의성 확보,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민간위탁 방식이 현재 터미널 운영에 필요
- 부족한 공공성과 관리운영의 투명성은 지도·감독 권한 행사를 통해 확보할 수 있어 평창공영버스터미널에 민간위탁을 통한 관리운영을 추진

○ 직영 및 민간위탁 장·단점 비교

구 분	장 점	단 점
직영	- 운영 신뢰성, 책임성 강화 - 정책반영 용이, 공공성 확보	- 행정효율성 저하 - 인력확보 등 재정부담 - 시설관리 전문성 미흡
민간위탁	- 전문성 적용으로 서비스 질 향상 및 편의성 확보 - 운영예산 절감	- 수익위주 운영으로 공공성 악화 우려

자. 추진계획

- 민간위탁 군의회 동의안 심의 : 2024. 9.
- 민간위탁 공고 : 2024 9.~10.
-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: 2024. 10.
- 협약 체결 : 2024. 10. 21.일한
- 민간위탁 운영 : 2024. 11.~ 2029. 10.(5년)

3. 참고사항

- 참고 1 : 소요예산 원가계산서
- 참고 2 : 관계법령

[참고1]

소요예산 원가계산서

(단위 : 원/년)

비	목	3인 기준	비	고
인 건 비	기 본 급	56,921,749		
	제 수 당	6,389,280		
	상 여 금	8,242,960		
	퇴 직 급 여 총 당 금	5,340,816		
	소 계	76,894,805		
지 출 경 비	보 험 료	6,926,868		
	복 리 후 생 비	5,840,000		
	통 신 비	322,596		
	수 도 광 열 비	785,183		
	전 력 비	1,615,830		
	세 금 과 공 과	12,000		
	소 모 품 비	890,423		
	지 급 수 수 료	3,350,800		
	소 계	19,743,700		
	중	계	96,638,506	
일 반 관 리 비		4,831,925		
이	윤	10,147,043		
지	출 원 가	111,617,473		
운 영 수 입	매 표 수 입	26,246,000		
	수 입 원 가	26,246,000		
관 리 위 탁 비		-85,371,473		
부 가 가 치 세 포 함		-93,908,000	천단위 절사	

[참고2]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-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**규칙**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-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“관리위탁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.

-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.
-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(轉貸)할 수 있다.
-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,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.
-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□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

제4조(대상사무) ①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
2. 공익성을 위하여 능률성도 함께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

제5조(위탁조건 및 기간)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한 그 필요성·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춰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충분조건: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위탁사무
2. 필요조건: 제7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